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6.(목) 배포 즉시

노동자 74명의 임금·퇴직급여 등 11억 4천만원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구속

-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

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(지청장 김성진)은 11월 26일(목) **노동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급여 등 11억 4천만원을 체불**한 제조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**구속**했다.

구속된 A씨는 대구 달성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**노동자 74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3억 5천만원과 퇴직급여 7억 9천만원 등 총 11억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**를 받고 있다. 특히, 피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들로,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음에도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**심각한 생활고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**됐다.

수사 결과, **사업주는 원청으로부터 납품대금 약 4억 3천만원을 수령하자마자 전액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잠적하였으며, 해당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.** 또한 피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**구체적인 체불금품 청산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**

또한, 사업주는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하면서 **친인척의 주소지로 위장전입**하고, **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이를 개통하지 않았다고 진술**하는 등 **자신의 소재와 연락처를 감추려 한 정황도 확인**됐다.

김성진 지청장은 “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외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사업주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체불금품 청산을 회피하는 등 악의적인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	책임자	과 장	양철수 (053-605-9101)
		담당자	노동감독관	이지훈 (053-605-9193)